



: 2020-05-1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노1364 무고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혜(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실, 박종학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고단445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의 증언,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강간한 것처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C은 주로 남녀 간 즉석 만남의 도구로 사용되는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인 'B'라는 어플을 이용하고 있었다. C은 2018. 1. 9. 01:23 피고인이 위 어플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 및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대화를 청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는 곳, C이 키우던 애완견, 취미, 음식 등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9. 1. 11. 00:13경 C에게 '집이에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C이 그렇다



고 하자 전화를 하여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01:21경 강아지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알려 준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가서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대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새벽 4시 반경 C의 집을 나와 신사역 근처 클럽에서 놀고 있던 지인을 만난 후 귀가하였다.

③ C은 08:05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잘 잤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17:09경 '응'이라고 답한 것을 시작으로 21:02경까지 지속적으로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 받았는데, 그 중에는 C의 만나자는 제안에 피곤하니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 내용, 카페서 음료를 마시거나 피자,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 하자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31.까지 거의 매일 C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다(대화는 주로 C이 먼저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C에게 방황염으로 산부인과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C이 '나도 검사 받을까?'라고 묻자 '당연한거 아니야?'라고 답하였고, 2018. 1. 19. C이 자신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자, '나도 염증은 정상이래', '근데 아직 많이 아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C과 자신의 팀장인 H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8. 1. 31.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C에게 전화하여 '강간으로 성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C이 강간이 아니었다고 하자 '연락하지 마라', '재수없다 너', 'ㅋㅋㅋ'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2. 1. C에게 성병검사결과를 전송하면서 해결을 요구한 후 2018. 2. 3. '전화 안받으시네요? 지금 H씨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모든걸 H씨한테 위임했으니까'라는 문자를 보냈다.

④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병원비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추궁을 받고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성병에 걸렸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C에게 연락하여



2018. 2. 4. 피고인을 대동하고 C을 만나 책임 추궁을 하였다. C은 강간 사실을 부인하며 차라리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날 C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C이 2018. 1. 11. C의 집 침대에서 강아지랑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30경 C의 집에서 나온 후 혼자 있기가 힘들어 클럽에 있던 친구와 연락하여 밥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C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K라는 클럽 앞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었다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51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만난 친구는 회사 선배인 H라고 하였다가 H가 이를 부인하자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신문에서도 당시 만났던 친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마지막 갑자기 그때 만났던 친구는 'P'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강간당한 직후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만났다는 친구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등 피고인의 언행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횟수, 대화시간 등에 비추어 'C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여 연락을 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C에게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한 방황염 등으로 고생하



고 있고, 검사 받으라는 요청을 하면서도 정작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 31. 성병 판정을 받은 후 치료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C에게 '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H와 자신의 모친에게 강간을 당해 성병에 걸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C이 강간 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결국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치료비를 마련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만을 호소하고 있을 뿐 형사 사법질서 및 상대방에게 가한 해악에 관하여는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C이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C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C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2020-05-18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_____

판사 김동현 _____

판사 이성복 _____